

#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이 금 태 의원)

의안 번호	42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3. 3.

발 의 자: 이금태·김종일·이규근·  
이주한·이동운 의원

## 1. 제정이유

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조례의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다. 물놀이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물놀이장의 이용 및 이용 등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- 마. 물놀이장의 관리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- 바. 물놀이장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## 3. 제정 조례안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
- 2)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##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물놀이장”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
가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5조의2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 시설(간이 탈의실, 샤워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)

나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9호의 물놀이형 수경시설

2. “이용자”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

3. “안전요원”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 범위)**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관리하는 물놀이장에 적용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물놀이장 운영·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**제5조(물놀이장의 운영)** ①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까지로 하며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.

2. 이용시간은 10시에서 17시까지로 하며, 수질관리 및 기계점검을 위하여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안전과 물놀이장 효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및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물놀이장의 이용)**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상세 이용수칙을 정하여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이용자 및 보호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이용하여야 한다.

④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한다.

⑤ 물놀이장(부대시설을 포함한다)을 훼손한 경우에는 안전요원에게 알리고 구청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**제7조(이용 등의 제한)**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

2. 물놀이장의 질서유지·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노약자, 임산부 등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

4.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한 사람

5. 애완동물 및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(장애인 보조견 제외)
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**제8조(물놀이장의 관리)**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,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단, 제2조제1호가목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인 경우에는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6조

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한다.

② 구청장은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89조의3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물놀이장 이용 개시 전과 종료 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물놀이장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9조(보험 가입)**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시설의 위탁 운영)**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및 「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·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위탁받은 자는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,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 법령

## 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2. “어린이놀이시설”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## 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

제16조의2(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)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, 2019. 5. 15., 2023. 2. 6.>

1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
2.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
4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
5.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 10의2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
6.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
2.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
3.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
4.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□ 물환경보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9. “물놀이형 수경(水景)시설”이란 수돗물,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, 연못, 폭포,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.

가. 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사설(遊技施設) 또는 유기기구(遊技機具)

나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  
다.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

# 의원발의 서명부

□ 대구광역시 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연 번	의 원 명	서 명	비 고
1			
2			
3			
4			
5			
6			
7			
8			
9			
10			